일련번호	2026 - X

현 지 처 분 요 구 서

귀 기관에 대한 안성시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오니 즉시 조치하시기 바라며,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 4. 9.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단장

기관명·부서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안성시 나과	2026	주의	-	-	

제 목 :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업무 소홀

1. 관련 법령 (판단기준)

○ 안성시 나과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등에 따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 · 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은 산림사업시행업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산림사업을 준공한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완료되는 날까지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위 부서는 산림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림기술법에 따라 착수 전 산림사업시행업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관련 법률에 따라 심사하여 승인서를 발급하고, 사업 준공 후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 그런데 안성시 나과는 최근 4년 간 (2022. 10. 1.~ 감사일 현재까지) [표]와 같이 총 XXX건 XXXXX백만 원 규모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면서 산림사업시행업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 및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관련법률에 따라 심사, 승인서 발급 및 안전점검에 관한 관리업무를 소홀하게 하였다.

[표] 연도별 산림사업 추진 현황(생략)

(단위 : 건, 백만 원)

자료: 붙임 안성시 제출자료 “산림사업 추진 명세” 재구성

○ 그 결과, 산림사업장 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성시장은

○ 앞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산림사업 추진 명세(생략)

(단위 : 백만원)

자료: 안성시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2026 - X

현 지 처 분 요 구 서

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시기 바라며,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 4. 9.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단장

기관명(부서)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안성시 가관	2026	주의	-	-	

제 목 : 道 계약심사 미이행

1. 관련 법령 (판단기준)

○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계약집행기준 제3장-제1절-1-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그리고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도비가 포함된 1억원 이상 일반용역의 경우 시·군 발주사업이라 하더라도 도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안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경기도 심사대상 사업은 시의 심사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다.

○ 따라서 안성시는 도비가 포함된 1억원 이상의 일반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道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 가관에서는 [표]와 같이 도비가 포함된 5개의 **“■■■■ 용역”**이 道 계약심사 대상임에도 道 계약심사 대상 여부 확인을 누락하고 市 자체 계약심사로 이행하여 계약심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道 계약심사 미이행 현황(“■■■■ 용역”) “생략”

○ 그 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안성시장은

○ 앞으로「안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등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026 - X

현 지 처 분 요 구 서

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시기 바라며,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 4. 9.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단장

기관명(부서)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안성시 (가과, 나과, 다과)	2026	통보 (시정완료)	회수	●원	

제 목 :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적립금 정산 소홀

1. 관련 법령 (판단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4항에 따르면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1]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심

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Ⅱ-2-다.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따르면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중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2]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안성시 가과, 나과, 다과(이하 "3개 부서"라 한다)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심사하면서 퇴직자 중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해 보조금으로 적립한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이 정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액을 확정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보조금을 반납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 그러나 3개 부서는 별지의 [별표] "1년 미만 근속근로자의 퇴직적립금 반납내역"과 같이 회계연도 종료 후 사회복지시설에 교부된 운영비 등을 정산하면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종사자 XX명의 퇴직적립금이 정산되지 않았는데도 반납 조치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퇴직적립금 ●원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까지 적기에 반납되지 않았다.

○ 특히 나과는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에서 퇴직한 XX명의 퇴직적립금 ♠원을 20XX. X. XX.이 되어서야 반납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X. XX.에 반납받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1년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정산 취지를 저해하였다.

○ 다만 가과와 나과는 20XX. X. X. 감사계획이 통보된 이후 적극적으로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반납받지 않은 퇴직적립금 XX건 ♣원을 반납받았다.

조치할 사항 안성시장은

○ 위 감사 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안성시는 감사계획이 통보된 이후 미반납된 퇴직적립금 ♣원을 회수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시정완료)]**

[별지]

[별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반납내역 "생략"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2조의11 삭제(2021.1.12.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1.12. 제정, 2021.7.13. 시행)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보조금으로 적립된 퇴직적립금은 그 사용 목적이 소멸하게 됨